

1998. 7. 9
제77회 임시회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운 영 위 원 회

<전문위원 : 장 재 영>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■ 제안사유

- 대통령령 제5537호('98.4.30)로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수가 18명에서 13명으로 감원 조정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
 - 1. 기획총무위원회 9명을 6명으로
 - 2. 사회도시위원회 8명을 6명으로
 - 3. 의회운영위원회 8명을 6명으로

■ 기타 참고사항

-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제2항
-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

■ 검토의견

-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수를 확정짓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이 지난 '98년 4월 30일자로 개정·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 의원정수는 18명에서 13명으로 감원 조정되었습니다.
-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정수는 너무 많게 함으로써 위원회 상호간에 균형을 잃게 하거나, 너무 적게 하여 위원회로서의 전문성을 기할 수 없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, 당해 의회의 의원정수를 감안하고,

하나의 회의체로써의 규모를 고려하여,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
기할 수 있게 그 종류와 위원정수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.

- 다만 의장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이 될
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위원
정수에 있어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기한 것이라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
주셨으면 합니다.

